##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0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신영대・윤준병・안호영

박희승 • 전재수 • 김정호

이개호・박성준・한준호

박홍배 · 임광현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 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지방자치단체·민간시설 이용료 감면'사업의 필요성을 느 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 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② (생 략)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제2항의 헌혈에 관하여 특		
	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		
	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		
	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u>있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